

## 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의 전담영역별(교육, 연구, 산학협력)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내규는 전담 영역별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임용)** ①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, 「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」를 준용한다.

②임용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정한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.

③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 최소 신청 자격은 신청교원이 6년(2년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3회까지 계약 임용 가능)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소정의 정년보장임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
④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3조제4항의 특별전형 및 관련 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.

**제4조(기간)**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,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직급구분)**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직급은 연구실적과 교육경력, 산학협력 경력 등에 따라 전담영역별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**제6조(자격)**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7조(절차)**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전임교원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8조(처우)**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처우는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제8항에 근거하여 개별계약에 의한다.

**제9조(책임학점)** ①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연구전담과 산학협력전담은 학기당 3학점 이상, 교육전담은 9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

**제10조(복무)** ①복무사항에 관하여는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단과대학교수회의 참석 등 소속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본교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으로서 본교 근무기간 중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6개월 이내의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세부사항)**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당시의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